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

X사는 식품사업부문과 임대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X사를 지배하는 단일 주주는 없다. 당기 중 X사는 이사회에서 식품사업부문을 존속기업 'X'로 하고 임대사업부문을 신규기업 'Y'로 설립하는 방식으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승인일 : 2010년 8월 1일
주주총회 승인일: 2010년 8월 30일
인적분할일 : 2011년 2월 1일

임대사업부문의 재무정보는 아래와 같으며, 임대사업부문은 IFRS 5에 따른 분배예정자산집단의 정의를 만족함.

	장부금액	공정가치	순공정가치 (공정가치-분배부대비용)
2010년 8월 30일	100	200	190
2010년 12월 31일	100	220	210
2011년 2월 1일	100	180	170

X사는 상기 인적분할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가?

2008년 11월 발표된 IFRIC 17 '소유주에 대한 비현금자산의 분배'는 비현금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기로 한 경우, 미지급배당금의 인식시기, 측정방법, 미지급배당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점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본 해석서는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비현금자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분배되는 비현금자산이 분배 전·후에 동일한 당사자에 의하여 지배받는 경우에는 이 해석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비현금자산은 기업의 유형자산, 사업부, 주식 등이 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소유한 사업부를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하는 인적분할의 회계처리에 상기 기준서가 적용된다. IFRIC 17의 적용을 받는 인적분할의 회계처리는 현행 인적분할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등에 관한해석49-55.분할·분할합병에 관한 회계처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1) 미지급배당은 언제 인식하는가? (IFRIC 17 문단 10)

배당이 적절하게 승인되고 더 이상 기업에게 재량이 없는 시점에 인식되며, 일반적으로 배당이 선언되고 승인된 시점이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배당 및 인적분할은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총에서 승인한 시점에 미지급배당을 계상하게 될 것이다.

(2) 미지급배당은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가? (IFRIC 17 문단 11-13)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 금액은 분배될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따라서, 분배될 자산이 사업이라면 기존에 인식되지 않았던 무형자산이나 영업권이 포함되어 공정가치가 결정될 것이다.(IFRIC 17 문단 BC27, BC 57)

또한, 인식시점 이후 매 보고기간말과 최종 정산시점에 배당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며 부채금액의 변동분은 분배금액에 대한 조정이므로 자본으로 인식하게 된다.

(3) 미지급배당이 결제될 때, 분배된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 (IFRIC 17 문단 14)

기업이 미지급배당을 결제할 때, 분배되는 자산의 장부금액과 미지급배당의 장부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IFRIC 17의 제정으로 IFRS 5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기준서는 소유주에게 비현금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분배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소유주에게 분배예정인 비현금자산이 분배예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IFRS 5에 따라서 분배부대원가를 차감한 후 공정가치(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분배예정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IFRS 5 문단 5A, 8, 15A).

상기 사례의 경우, X사는 비현금자산인 임대사업부문을 주주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해당 사업부의 주식 분배형태)하며, 분배 전·후에 임대사업부문은 동일한 당사자에 의하여 지배 받는 경우가 아니므로, IFRIC 17이 적용된다 .

각 일자별로 IFRIC 17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1) 2010년 8월 1일: 이사회승인일
회계처리 없음.

(*)인적분할은 주주총회 승인대상이므로 주총 승인이전에는 현상태로의 분할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분배예정자산으로 분류를 아직 충족하지 않았다고 가정

2) 2010년 8월 30일: 주총승인일

차) 자본 200 대) 미지급배당부채 200(*)

(*) IFRIC 17에 따라 배당채무를 임대사업부의 공정가치로 인식함.

차) 분배예정자산 100(*) 대) 해당자산 100

(*)IFRS 5에 따라 임대사업부의 자산,부채를 분배예정자산으로 계정분류하였으며, 분배예정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은 'Min[장부가액, 순공정가치(공정가치-분배부대원가)]'로 인식하게 되므로, 둘 중 작은 금액인 100으로 인식하게 됨. 또한, IFRS 5에 따라서 해당 자산의 상각은 중단함.

3) 2010년 12월 31일: 기말 회계처리

차) 자본 20 대) 미지급배당부채 20

(*) IFRIC 17에 따라 배당채무의 공정가치 변동을 자본에 조정하며, 분배예정자산은 IFRS 5에 따라 추가적으로 조정할 손익이 없음

4) 2011년 2월 1일: 인적분할 완료

차) 미지급배당부채 40 대) 자본 40

(*) IFRIC 17에 따라 배당채무의 공정가치 변동을 자본에 조정함.

차) 미지급배당부채 180 대) 분배예정자산 100
당기손익 80

(*) IFRIC 17에 따라 배당채무의 장부금액과 분배예정자산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함.

본 해석서의 제정으로 (시행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조기적용 허용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이 사업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현행 기준과 차이가 발생하며, 인적분할로 인하여 기간손익이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해석서의 적용 범위 및 내용을 파악하여 사전에 거래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작성자: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엄경순 회계사

중간기간에 적용될 법인세율의 추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문단 30의 (3)에서는 '법인세비용은 각 중간기간에 전체 회계연도에 대해서 예상되는 최선의 가중평균연간법인세율의 추정에 기초하여 인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지침 B13에서는 법인세는 연간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은 중간기간의 세전이익에 기대총연간이익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인세율, 즉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간기간에 적용될 법인세율은 항상 추정평균연간유효법인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과세목적상 공제되지 않는 특정 지출이 존재한다면, 이로 인해 유효법인세율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제되지 않는 항목으로 인하여 유효법인세율의 추정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유효법인세율 결정시 제외하고, 해당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 계산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에 대한 실무지침 B19에서 일회성의 사건과 관련되는 세금혜택을 중간기간의 법인세비용을 계산할 때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접근방법과 논리가 동일하다.

과세목적상 공제되지 않는 특정 지출이 존재하는 경우에 유효법인세율의 추정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사례) A기업은 상반기에 500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550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지출이 상반기에는 140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60백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기업의 세법상 적용세율은 30%라고 가정한다.

A기업의 과세소득과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1월 - 6월	7월 - 12월	1월 - 12월
법인세차감전손익	(500)	550	50
공제되지 않는 지출	140	160	300
과세소득	(360)	710	350
법인세부담액			(105)

만약,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특정 지출까지 포함하여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한다면, 법인세율은 210%(=105백만원/50백만원)이며, 이를 중간기간에 적용하면,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방법1)

	1월 - 6월	7월 - 12월	1월 - 12월

법인세차감전손익	(500)	550	50
법인세부담액 (210%)	1,050	(1,155)	(105)
당기손익	550	(605)	(55)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반기의 재무상태표에는 1,050백만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며, 법인세율이 210%이므로 하반기 법인세부담액은 1,155백만원, 1년간 법인세부담액의 합계는 105백만원이 계상될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210%로 적용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을 과대 계상하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만약,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지출 항목의 효과를 제외하고, 유효법인세율을 계산한다면, 유효법인세율은 $30\% (=105/350 \times 1)$ 가 된다.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항목을 해당 중간기간에서 별도로 분리한다면,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방법2)

	1월 - 6월	7월 - 12월	1월 - 12월
과세소득(①)	(360)	710	350
법인세부담액 (30%)(*2)	108	(213)	(105)
공제되지 않는 지출(②)	(140)	(160)	(300)
법인세부담액 (*2)	-	-	-
합계			
법인세차감전손익(①+②)	(500)	550	50
법인세부담액	108	(213)	(105)
당기손익	(392)	337	(55)

(*1) 공제되지 않는 지출로 인한 비용 300 고려전 세전이익(50+300=350)

(*2) 공제되지 않는 지출은 유효법인세율 결정시 포함하지 않았으며, 해당 중간기간에 그 효과를 반영하였음.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지출 항목에 대한 법인세부담액은 없음.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상반기의 재무상태표에는 108백만원의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될 것이며, 유효법인세율이 30%이므로 하반기 법인세부담액은 213백만원, 1년간 법인세부담액의 합계는 105백만원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법1)은 유효법인세율의 왜곡된 효과로 인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이 과대계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방법2)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작성: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인영 회계사

금융부채의 조건변경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 13호 ‘채권·채무 조정’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원리금, 이자율 또는 만기 등 계약조건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변경된 경우의 회계처리를 다루고 있다. 조건 변경으로 채무가 조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조정에 따른 약정상 정해진 미래 현금흐름을 채무 발생시점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된 현재가치와 채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채무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채무조정이익으로 인식한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가 적어도 10%이상이라면 계약조건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40, AG62).

사례) 채무의 재협상

A사는 20X0년 1월 1일에 연 9%의 이자율로 10년 만기의 1,000,000원을 차입했고, 관련 비용이 100,000원 발생했다.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후불로 지급된다. 20X5년에 A사는 대여자에게 차입금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 받았다. 다음은 20X6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것으로 합의된 조건들이다. 30,000원의 비용이 재협상을 위해 발생했다.

- 연 이자율은 7.5%로 후불
- 원금은 800,000원으로 변경
- 차입금 만기를 20Y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최초 차입금은 순 현금유입액인 900,000원으로 기록되며 상각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날짜	이자비용	현금지급액	장부금액
	10.6749%		
20X0년 1월 1일			900,000
20X0년 12월 31일	96,074	90,000	906,074
20X1년 12월 31일	96,723	90,000	912,797
20X2년 12월 31일	97,441	90,000	920,238
20X3년 12월 31일	98,235	90,000	928,473
20X4년 12월 31일	99,114	90,000	937,587
20X5년 12월 31일	100,087	90,000	947,674
20X6년 12월 31일	101,164	90,000	958,837
20X7년 12월 31일	102,355	90,000	971,192
20X8년 12월 31일	103,674	90,000	984,866
20X9년 12월 31일	105,134	1,090,000	-

20X6년 1월 1일에 잔여 현금흐름은 4년 동안 지급받을 이자와 원금 상환액으로 구성되며, 잔여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는 장부금액인 947,674원이다.

새로운 조건에 따른 현금흐름을 최초 채무 발생 시의 이자율인 10.6749%로 할인한 현재가치는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785,591원이다.

날짜	현금흐름	현재가치	비고
1 Jan 20X6	30,000	30,000	수수료
31 Dec 20X6	75,000	67,766	변경된 이자
31 Dec 20X7	75,000	61,230	변경된 이자
31 Dec 20X8	75,000	55,324	변경된 이자
31 Dec 20X9	75,000	49,988	변경된 이자
31 Dec 20Y0	75,000	45,166	변경된 이자
31 Dec 20Y1	875,000	476,116	변경된 이자+ 변경된 원금
		785,591	합계

785,591원의 현재가치는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82.9%이다.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차이가 162,083원(947,674-785,591)으로 잔여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10% 이상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약조건이 달라진 것으로 보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할 때는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하여 조건이 변경된 차입금의 공정가치로 계상하고 변경된 후의 차입금에 적용되는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상각한다.

작성자: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윤경 회계사